

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
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서정호

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오영탁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23년 10월 4일
- 회부일자 : 2023년 10월 4일

3. 개정이유

- 전년도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 제출기한 등 상위법령과 상이한 조문을 일치시키고,
- 위원회의 주요 심사·결정사항이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,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, 심사결과에 따른 징계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루고 있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같이 회의 비공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위원회 회의 비공개 근거 명문화(안 제7조제5항 신설)
- 연차보고서 제출기한 변경(안 제10조)
 - 제2차 정례회에 → 제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
-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른 자구 수정 등
 - 사람을 의미하는 “자” → “사람” (안 제2조, 7조)
 - 법령과 상이 : 풍부한 자 → 있는 사람 (안 제2조)
 - 띄어쓰기 : 남은기간 → 남은 기간 (안 제5조)

- 정비대상 용어

· 통괄한다. → 총괄한다(안 제6조)

· 제24조 내지 법 제29조 →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(안 제7조)

5. 검토의견

-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공직자윤리법」과 「공직자윤리법 시행령」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근거한 개정으로,
-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본 조례 제10조의 연차보고서 제출 기한을 ‘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’로 상위법과 일치시켰으며, 상위법령 시행령에 근거하여 위원회 회의에 관한 비공개 근거 조문을 신설함으로써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등 민감정보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였음.
- 또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는 등 전체적으로 법적 안정성 향상과 개정 목적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: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